

# 팔복교회 정관

2020. 2. 2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속 등) ①본 교회는 팔복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②본 교회의 소속 및 헌법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한다.
2.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황해노회」에 소속한다.
3. 본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이하 ‘장로회 헌법’이라 함)을 본 교회의 자치규범과 신앙원리로 삼으며, 본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장로회 헌법에 구속된다.  
③본 교회는 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원리를 존중하며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를 하는 장로를 세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며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조(목적과 비전) ①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정확무오한 신구약성경과 장로회 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 ②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고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며 교회 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본 정관을 근거로 당회에서는 각종 규정을 제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각 부서는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소재지) ①본 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 6번길 74에 주소지를 둔다.  
②본 교회의 예배당과 부속 시설은 교회 재산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본 교회의 정관을 규정함은 제2조 목적과 비전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회의 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발전과 목회유익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본 교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사업

2. 기독교 교육 및 장학과 관련된 사업
  3. 구제와 관련된 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기타 정관상의 목적과 비전 달성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본 교회는 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서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을 둘 수 있으며, 법인의 출연재산은 공동의회 인준을 받는다.

제5조(조직)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규정한 행정·사법 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 수납과 관리를 위한 제직회를 두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와 기관을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으며, 담임목사(위임목사로서의 당회장)는 교회 대표자이다.

제6조(정관의 변경) 본 교회 정관의 변경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 제2장 교인 및 직원

제7조(교인) ①본 교회의 교인은 교인명부에 등록된 자로 하며, 교인의 구분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에 참석하며,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 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2.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3. 세례교인 :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 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이다.
  4. 유아 및 어린이 세례교인 : 만 6세까지 유아(幼兒) 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입교인 포함) 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5. 입교인 :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어, 입교 문답을 거치고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면 입교인(세례교인)이 된다.
  6. 본 교회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교회 교인명부에 등재된 세례교인(입교인)을 의미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 ②본 교회 교인의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 교인은 정관에 따라 재산권이 보장된다.
  2. 본 교회 교인은 정관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한다.

3. 본 교회의 정관과 교단 헌법에 따라 시벌(施罰) 중에 있는 교인은 재산권 행사가 보류된다.

4. 교인제적 및 제명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와 재산권(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

③ 본 교회 교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주일을 구별되게 지키며,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교회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고, 교회의 예배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2.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기도와 봉사와 십일조와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 성경과 장로회 헌법과 본 교회 정관과 본 교회 정관에 명시된 각종 규정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遵行)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 본 교회 교인의 권리 및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예배나 설교를 방해하는 행위는 별도의 고소(고발)없이 즉시 당회가 재판회로 소집하여 시벌할 수 있다.

2. 본 교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아무런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않은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 단, 권리 중지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4. 교인의 권리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권리가 상실된다.

5. 교인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 및 상실케 할 수 있다.

6. 본 교단과 한국 및 세계 기독교계에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규정된 단체에 속한 자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유포하고 선전하는 자와 성경과 신앙에 위배되는 반 기독교적 사상을 추종하거나 유포 선전하는 자는 본 교회의 교인으로 입회제한 또는 퇴회조치를 한다.

⑤본 교회 교인의 퇴회는 당회의 결의로 확정하며,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고

별명부로 관리한다.

제8조(직원) ①(항존직)성경에 근거한 본 교회에 항상 존속할 직원은 담임목사(위임목사)와 시무장로와 안수집사로 하며 다음과 같다. 단,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만70세까지로 한다.

1. 담임목사(위임목사) : 노회로부터 교회 목양권,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받은 교회 대표자이고 설교, 성례, 권징,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 직무와 사역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당회장이 된다.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후 시무 사면을 할 때는 공동 의회의 결의와 노회의 승인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2. 시무장로 : 교인의 대표자로 위임목사의 목회활동을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시무장로가 은퇴할 경우에는 은퇴장로가 되며,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에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3. 안수집사 : 본 교회 무흠 남자 교인 중에서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은 자로 담임목사(위임목사)와 시무장로의 지도를 받아 재정 및 봉사 직무를 수행 한다. 안수집사가 은퇴할 경우에는 은퇴집사가 된다.

②(임시직)본 교회의 사정과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設置)한다. 단, 임시직의 시무 연한은 만70세까지로 한다.

1. 권사 : 만 45세 이상 된 여자 입교인으로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교인과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제직회 회원이 된다. 권사가 은퇴할 경우에는 은퇴권사가 된다.
2. 서리 집사 :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하며, 제직회 회원이 되고 그 임기는 1년이며 매년 임명한다. 단, 시무연한 이전에 서리 집사로 임명된 교인은 정년 후에 명예집사가 되고, 시무연한이 지난 입교인이라도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는 당회 결의로 명예집사가 될 수 있다.
3. 무임장로, 무임안수집사, 무임권사 : 이명 증서를 제출하고 본 교회에 출석한 무흠 교인을 당회의 결의로 무임장로, 무임안수집사, 무임권사로 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무임장로, 무임안수집사, 무임권사로 본 교회에서 5년간 계속 봉사한 자는 당회의 승인으로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 후보가 될 수 있다.
4. 명예권사 : 당회가 서리집사로 본 교회 및 타 교회에서 10년 이상 봉사한 만70세 이상의 여자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명예

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5. 부교역자 :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칭하고, 위임 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와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고, 의장이 언권을 부여할 경우 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담임 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서 계속 시무할 수 있다.
6. 선교사 : 본 교회는 필요시 선교사를 임용하되, 임용조건, 자격, 직무, 임기, 파송, 지원 등의 제반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③(일반유급직원)일반유급직원은 본 교회의 필요에 따라 행정, 시설관리, 차량 관리 등 유급으로 일하는 직원을 말하고, 채용, 임기 등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사권은 담임목사에게 있고 인사와 관련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항존직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

1. 본 교회 시무한 경력이 있는 담임목사의 자녀
2. 본 교회 시무장로의 자녀
3. 담임(위임)목사 공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본 교회에 시무한 경력이 있는 부목사
4.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소속된 위임목사

⑤항존직(장로, 안수집사) 후보자 자격,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당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하며,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직분별 직무) ①본 교회 담임목사 및 시무장로의 직무는 총회 헌법 및 정관 제14조 7항에 따른다.

②본 교회 안수집사의 직무는 목사 및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곤궁한 자를 권고 하며, 당회 감독 하에 환자 등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고, 교회의 일반 재정 등에 관한 수납, 지출을 관리한다.

③본 교회 시무권사의 직무는 교역자를 도와 심방, 전도 및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과 어려운 지경에 처한 교우를 위한 중보 기도하는 일이다.

제10조(당회 조직) ①본 교회는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회조직으로 예배, 재정, 교육, 선교, 전도 등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명칭과 임무는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정한다.

②위원회의 증감이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장이 결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위원회의 사역은 당회의 직무를 월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각종 사역에 대하여는 당회의 지도와 협력 하에 처리할 수 있다.

④ 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무 장로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 및 부장은 위원회 청원으로 당회가 승인하여 세운다.

제11조(부속기관) ① 본 교회의 안수집사회와 권사회가 교단 헌법에 근거한 기관은 아니나, 본 교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봉사, 교회 부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를 둘 수 있다.

② 기타 필요한 경우 당회 결정에 따라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 제3장 회 의

제12조(공동의회) ① 본 교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공동의회를 둔다.

②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무흠세례교인(입교인)으로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회의 입회 결정이 있어야 한다.

③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서기가 된다.

④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의결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공동의회 회원 3분의 1이상의 정원이 있을 때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⑤ 공동의회 소집공고는 1주일 전에 하되, 안건, 일시, 장소를 주보에 게재한다.

⑥ 본 교회 공동의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는 아래와 같다.

1.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 득표로 의결한다.
2.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의결한다.
3. 본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의결한다.
4. 위임목사 청빙청원, 부동산의 처분, 소속교단 및 노회소속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 득표로 의결한다.
5. 노회소속 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지시로 인한 변경은 당회의 의결로 한다.

6. 본 항 제1호부터 6호까지 이외의 사항을 위한 공동의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의결한다.
7. 부동산 처분, 정관제정 및 개정, 교단 및 노회소속 탈퇴·변경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서면위임한 회원은 개회를 위한 출석 인원수에는 포함하되, 투표 인원수 및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⑦본 교회의 공동의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연도 결산안과 다음연도 예산안의 확정
2. 감사보고서 승인
3. 당회 및 회원 3분의 1이상의 청원사항
4. 위임목사 청빙청원에 관한 사항 및 투표
5.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 선거
6. 정관의 제정 및 개정
7. 교단 및 노회의 탈퇴, 노회소속 변경, 교회합병 및 분립
8. 교회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매각
9. 상회가 지시한 사항

⑧공동의회의 지연 소집 등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을 선집행하고 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⑨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⑩본 교회의 항존적 투표는 선출예정 인원수만큼을 투표지에 기표하고 당선자는 의결정족수이상 득표자로 하며, 1차투표 결과 선출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미달인원의 2배수를 후보자로 하여 2차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당회) ①본 교회의 당회는 노회에서 파송을 받아 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목사는 당회장이 된다.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언권회원이 된다.

②당회 서기는 시무장로 중에서 선임한다.

③정기당회는 당회장이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 소집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상회가 당회를 소집한 경우

⑤본 교회 당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는 아래와 같다.

-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선거, 위임목사의 청빙청원, 정관의 제정 및 개정, 교단 및 노회의 탈퇴, 노회소속 변경, 교회합병 및 분립, 부동산의 구입 및 처분, 교인의 치리와 관련한 사항은 회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의결한다.
- 본 조 제5항 제1호 이외의 사항을 위한 당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⑥당회 본인의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는 개회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의결 시에는 제척한다.

⑦본 교회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핌.
- 교인의 입회와 제적 결정
- 예배와 성례 거행
-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 주관
- 현금 종류와 시기 및 방침 작성, 재정 주관
- 범죄한 자를 심문하고,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가 명백할 때 권징
- 노회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 경유권 및 교회상황을 노회에 보고
- 교회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매입 및 관리(임대, 담보제공 등). 단 부동 산의 매입은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 해당연도 결산안과 다음연도 예산안을 공동의회 제출
- 공동의회(정기 및 임시) 소집 의결
-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취득, 처분, 증여, 매매, 변경 등)
- 재정의 차입
- 본 교회 재산관리와 특별 목적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결정
-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 규약, 기준, 시행세칙, 지침 등의 제정 및 개정

⑧본 조 제7항 제8호 및 제14호는 당회가 선 결정 시행한 후 공동의회에 보고 한다.

⑨본 교회 당회의 권리재판은 장로회 헌법을 준용한다.

⑩당회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당회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당회는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본 교회의 당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컴퓨터)시스템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다.

- 입교인 및 세례교인명부
- 책벌 및 해벌인명부

3. 별세인 명부
4. 이명인 명부
5. 유아세례 및 어린이세례 명부
6. 교회연혁
7. 교회 재정장부
8. 교회 동산 및 부동산 대장
9. 그 밖의 중요 문서

⑥당회는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채택된 회의록은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⑦당회 및 당회소속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침, 규정 등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본 조 제7항 제15호에 따라 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할 수 있다.

제14조(제직회) ①본 교회는 사업집행기관으로 제직회를 두며 제직회는 당회장,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②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제직회에서 선임한다.

③정기 제직회는 분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 당회의 의결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1주일 전에 일시, 장소를 공고한다.

④제직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직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집행
2. 제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3. 당회가 요청한 사항
4. 부동산 처분 검토(결정은 공동의회)
5. 제직회 운영관련 안건

⑬제직회는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채택된 회의록은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⑭제직회 운영지침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기관장회의) ①본 교회는 위원회 및 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업무협의를 위해 기관장회의를 둘 수 있다.

②기관장회의 구성은 제13조제10호에 따른 위원장 및 기관장 중에서 당회장이 당회 협의를 거쳐 선정하며, 당회장이 의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 제4장 재산과 재정

제16조(재산) ①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의 일반현금과 특별현금, 기타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부동산을 말한다.

②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팔복교회』의 소유로 등기한다. 단,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당회장)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부동산구입은 당회결의에 따라 진행하며, 이를 제직회에 알린다.

④부동산처분은 당회결의 후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예산과 결산) ①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본 교회 예산은 예결산위원회가 각 위원회별 당해 결산 및 익년 사업계획을 기준하여 예산을 책정하며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한다.

③결산은 재정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세입 및 세출 결산안을 작성하고 예결산 위원회에서 심의 후 당회 보고 및 제직회 결의 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여 확정한다.



제18조(재원운영과 회계처리) ①본 교회의 모든 재원은 교인들의 일반현금, 특별 현금, 기타 교회수입으로 충당한다.

②본 교회의 재원구분과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다만 당회 결의로 예산의 전용 또는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특별회계는 부동산구입, 사택구입과 사택임차 등 특별한 목적으로 결의한 사항에 국한하여 사용한다.

③본 교회 재정운영은 공동의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인준한 예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④본 교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신청을 위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영수증을 재정위원회로 제출한다.

2. 각 위원회별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며 매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3. 회계장부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재원의 운영과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19조(사례비) ①본 교회 사례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매월 개별 통장으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타 사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0조(자금의 차입) ①교회사역을 위한 결의에 따라 부동산구입, 교회건축, 리모델링 등을 시행할 경우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②차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5장 보 칙

- 제21조(보칙) ①본 교회 정관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을 참고하여 당회 결의로 시행한다.  
②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하되 회계장부 보관기관은 본 정관 제1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다.

제22조(경과조치) ①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교회가 시행하여 온 정관 및 각종 규정, 법률 행위와 제반 행정 및 사법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추인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 정관 제1조제2항의 소속 교단 또는 노회의 명칭이 교단 사정으로 변경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자동 변경된다.

제23조(주소지 변경) 본 교회 주소지 변경은 정관변경 없이 당회의 결의로 변경된 주소로 한다.

## 부 칙<2020. 2. 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간서인 명부

| 직 분         | 주 소                                      | 날인  |
|-------------|--|-----|
| 당회장 이덕형 목사  | 인천 미추홀구 수령로 6번길 66                       | 이덕형 |
| 당회서기 민원기 장로 | 인천시 남구 봉곡길 43번길 14-17                    | 민원기 |
| 당회원 김덕영 장로  |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11동 2305           | 김덕영 |
| 당회원 주영빈 장로  | 미추홀구 낙성동로 135 미추홀파크스토 APT 205/601 주영빈    | 주영빈 |
| 당회원 안형우 장로  | 인천 미추홀구 용장동 원로 33 SK 스카이아 105동 605호      | 안형우 |
| 당회원 신주열 장로  |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192. 1509동 1905호 (7층힐스테이트)   | 신주열 |
| 당회원 최상균 장로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6번길 18 1동 708호 (동아아파트)     | 최상균 |
| 당회원 강대웅 장로  |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192 111동 802호 (롯데캐슬)         | 강대웅 |
| 당회원 최영문 장로  | 인천 남동구 구월로 192 1동 802호 (롯데캐슬) A 1304 204 | 최영문 |
| 당회원 김성철 장로  | 인천 미추홀구 경인북길 279번길 40                    | 김성철 |
| 당회원 김태규 장로  | 인천 미추홀구 원인재로 237 대수 1차 105/102           | 김태규 |
| 당회원 정관식 장로  |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북길 315-17                     | 정관식 |